
2020년도 하반기 자체감사 주요 지적 사례



2021. 8.

서 울 대 학 교
[감 사 팀]

I. 2020년도 하반기 자체감사 현황

□ 감사 운영 방향

- 5년 이상 종합감사 미 실시 기관 감사
- 행정기구 및 재무원이 별도로 지정된 부속 연구소(원)에 대한 감사
- 감사 처분 후 장기간 미이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이행력 확보 방안 강구

□ 감사 실시 기관 및 조치사항

- 실시 기관(대상 기간 : 2020. 9. ~ 2021. 2.)
 - 종합감사 : 행정기구,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주관 연구시설
 - 특정감사 : 기타 기관
 - 감사처분 처리결과 이행 실태 확인 점검 (17개 기관)
- 감사결과 조치사항
 - 시정 : 8건(재정 7건, 85,521천 원 포함)
 - 경고·주의(기관) : 22건
 - 통보 : 11건

II. 자체감사 주요 지적 사례

1 수입금 등 자금 관리 부적정

- 각 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전부 법인회계에 납부하여야 하고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없으며, 각 회계연도의 경비 는 그 연도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에도,
 - ○○○○ 주관 연구소(원)는 예금이자와 저작권료 등 각종 수입금을 예산 에 편성하지 않고 장기간 연구소(원) 보관금 계좌에 보관하면서 직접 사용하였음
- 보관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결의서를 작성하여 보관금 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여야 하고 출납내역 확정 및 출납부 결재는 통합행 정시스템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,
 - ○○○○ 주관 연구소(원)는 보관금을 출납할 때 통합행정시스템을 이용하 지 않았고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았으며 출납원의 결재 없이 지출하는 등 수입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[관련 규정: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, 서울대학교 보관금 관리 규칙 및 서울대학교 재무·회계 규정]

2

장기 미회수 채권 관리방안 마련

- 수입징수원이 수입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·결정하여 납부의무자 등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고,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독촉을 해야 하며, 납부 독촉을 한 후 그 독촉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,
 - ◇◇◇ 등 4개 기관에서는 기기 사용료와 용역료, 그리고 부당이득금 등의 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였고, ■■■■은 채권을 임의로 결손처리 하는 등 채권 회수 및 관리가 부실한 상황임에도,
 - 수입징수원 및 채권관리원의 직무 및 역할 범위가 모호하고, 채권의 관리 방법, 관리 기간, 회수 및 결손처리 등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본부 소관부서에서 이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 안내하도록 함.

[관련 규정: 서울대학교 재무·회계 규정,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(기획재정부)]

- 학교의 장은 유학이나 연수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매 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휴학을 한 경우, 제적·연수 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유학이나 연수가 끝난 경우,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 출입국·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기간 내에 미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에도,
- 외국인 학생의 본교 수학과 학사 지도 등을 담당하는 ●●●은 각 대학(원) 외국인 유학생의 휴학 및 제적 등의 학적 상태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, 각 대학(원) 담당자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적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등 업무절차 미흡 및 전산 시스템 부재로 2015. 3. 1. 부터 2020. 8. 31.까지 외국인 유학생 학적 변동 신고 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6건(13명, 6,240,000원)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.

[관련 규정: 출입국관리법]

4

장학금 지급 방식 및 보고 미흡

□ 장학금 지급 방식 부적정

-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고, 지출원이 지출하려는 때에는 제반 관계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에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, 지출이 사무착오 및 기타 사유로 과오 지급되었을 때는 즉시 반납 조치하여야 하여야 함에도,
- ●●●은 장학금을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았고, 연간(당해연도 2학기 및 다음연도 1학기) 소요되는 장학금을 미리 계산하여 단과대학(원)으로 지급하여 다음연도 1학기 재원은 이월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으며, 지급 후에는 별도의 정산을 안내하지 않아 단과대학(원)에서 집행 잔액을 지속적으로 누적하여 보관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.

[관련 규정: 서울대학교 재무·회계 규정, A장학금 관리지침 및 B장학금 관리지침 등]

□ 장학금 미보고

-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한 장학금 내역은 총장(장학복지과)에게 보고하여 대학공시자료와 대학평가 등에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, 통합행정시스템(장학)에 지급 내역을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,
- ●●●은 2015. 1학기부터 2019. 1학기까지 해외연수 장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 555,444,200원(57명) 및 2015. 1학기부터 2017. 2학기까지 지급한 장학금 601,000,000원(228명)을 총장에 보고하지 않고 통합행정시스템에도 입력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.

[관련 규정: 서울대학교 장학금 규정]